#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42

발의연월일 : 2021. 5. 11.

발 의 자:이용호·정성호·안호영

김수흥・박영순・이상헌

이용빈 · 민병덕 · 추경호

양정숙 • 한병도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와 관련,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.

이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(SPC)에 대해서도 부

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 0조의2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5호 중 "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"를 "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(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20조의2에서 같다)"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"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"을 "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5호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	제16조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
자)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	자) ①
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	
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	
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	
자가 이를 시행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	5.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
<u>자</u> 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	는 사업시행자(제4호에 해당
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	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
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	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
	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
	<u>정한다. 이하 이 항 및 제20</u>
	<u> 조의2에서 같다)</u>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2(산업단지의 신탁개발)	제20조의2(산업단지의 신탁개발)
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	①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
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	<u>호에 해당하는</u>
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	
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	
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	
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	
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	
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